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과 관련한 주요 법규위반사항을 반영하고 특수여객 자동차의 점검대상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는 등 교통수단 안전점검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안전점검결과 개선권고 등 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규정(안 제1장제2절 2.3.2 나. 3))

*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

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침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의 점검대상에 특수여객 추가(안 제2장제2절 2.2, 가.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

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침에서 누락된 사업장 외에서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 점검대상 자동차에 전세버스* 추가 (안 제2장제3절 3.3,

3.3.1)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1호

라. 자동차 및 운수업종별 점검표, 자동차 및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

착안사항에 법규 위반사항 추가 및 용어 정비(안 제2장제2절 2.4 나. 6),

별표1,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규대비표

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절2.3.2 나목3) 중 “교통행정기관은 시정지시”를 “교통행정기관은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받은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
으로 한다.

제2장제2절2.2 가목3) 중 “마을버스·일반화물”을 “마을버스·특수여객·일반화물”으로 한다.

제2장제2절2.4 나목6) 중 “운전정밀검사 결과”를 “운전적성정밀검사”로 한다.

제2장제3절3.3.1 가목 중 “개인택시”를 “개인택시, 전세버스”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 및 운수업종별 점검표

1. 법인택시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일반현황	등록사항(차고지 등) 변경 미신고			
	지입·도급제 운영			
운전자 관리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종사 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 수검 여부			
	운전자 입·퇴사 보고			
	운행 전 운전자 음주 확인 여부			
운행관리	부제운행 준수 여부			
교육관리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이수 여부			
	운전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교통사고 관리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자동차 관리	차내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			
	정기검사 수검 여부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의 명칭, 자동차의 종류 등) 여부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정상 상태에서 운행여부 및 기록의 보관·제출·조작 등 여부			
	좌석안전띠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차량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등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2. 버스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일반현황	등록사항(차고지, 영업소) 변경 미신고			
	지입·도급제 운영			
운전자관리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종사 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 수검 여부			
	운전자 입·퇴사 보고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확인 여부			
운행관리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여부			
	면허·등록 노선위반 운행			
	노선도 비치 여부			
교육관리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이수 여부			
	운전자 보수교육 실시 여부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교통사고관리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자동차관리	차내 운전자자격증명 게시 여부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 신호용 부저 작동 여부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차내실내표지판(운행계통도,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연락처, 차고지 등)			
	좌석안전띠 정상 작동여부 및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차량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등			
	정기검사 수검 여부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 명칭, 자동차의 종류 등) 여부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정상 상태에서 운행여부 및 기록의 보관·제출·조작 등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무단해체·조작 여부 및 정상 작동상태에서 운행 여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3. 화물·위험물 운반차량 및 건설기계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 호	미 흡	해당 없음
일반현황	차고지 관리(법정 기준 확보, 타 용도로 사용여부 등)			
운전자관리	운전자 자격요건(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여부)★ 및 부적격자 채용 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 수검 여부			
	운전자 입·퇴사 보고			
운행관리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			
교육관리	운전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교통사고 관리	교통사고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차량관리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게시 여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덤프트럭)★			
	정기검사 수검 여부★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차량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1대 사업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표시 여부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안전띠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차량구조 및 장치의 임의 변경 등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기록의 보관·제출·조작 등 여부(단, 건설기계의 경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거나 주행속도 60km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무단해체·조작 여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최대 적재 중량 표시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 : 건설기계 7종에 적용되는 항목

4. 어린이통학버스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일반현황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앞 유리 부착 여부			
	어린이 보호표지 규격 및 부착 여부(앞, 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색상(황색)			
	보험가입여부			
교통사고 예방대책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일상점검 실시 여부			
	어린이(유아) 보호자 탑승 여부			
자동차관리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비치 여부			
	좌석안전띠 상태			
	승강구 발판 높이 규격 준수 여부 (1단 30cm, 2단 20cm 이하)			
	정기검사 수검 여부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여부			
	등화장치 적정 여부			
	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 변경 여부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5. 개인택시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 호	미 흡	해당 없음
일반현황	개인택시 대리운전 및 불법 양도·양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운행관리	부제은행 준수 여부			
자동차관리	운행기록장치 설치, 작동 여부			
	차내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퇴색·마멸 상태 등)			
	미터기 작동 및 봉인 상태			
	빈차 표시등, 방법등 관리 상태			
	차령초과 운행여부			
	정기검사 수검 여부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 명칭, 자동차의 종류 등) 여부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좌석안전띠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차량구조 및 장치 임의 변경 등			
	중형택시 지정 색상			
	승강문 및 창문 작동 상태			
	좌석 쿠션의 노후, 내려앉음 파손 여부			
	불법 시설물 부착운행 여부			
	영수증 발급기 및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 작동 상태			
	신용카드결제기 부착여부(모범·대형)			
기 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비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점검표를 수정할 수 있다.

[별표 2]

자동차 및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 착안사항

1. 일반현황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등록사항(차고지 등) 변경 신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관청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 ·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서 및 인가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내용확인 · 면허기준대수와 배차일지 확인
지입·도급제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 급여대장 · 의료보험 가입명부 · 수입금일보 · 정비관계철 · 배차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 취업신고 여부 · 고정배차여부 · 부품 및 정비비 지출 여부 · 교대 현장 실사

2. 운전자 관리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종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 인사카드 · 운전자 이력서, 경력 증명서 · 운전자 자격증 · 운전적성정밀검사판정표 · 배차일지 등 승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운전자가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자료) · 운전자의 승무기록 확인 · 채용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 여부 확인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 수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및 조합의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 대상자 통보 현황 · 사고보고서 · 운전자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점수 ·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통보 현황 및 사고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정밀검사 수검여부 대조(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자료)
운전자 입·퇴사 보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운전자 현황 · 운전자 입·퇴사 보고서 · 급여대장, 배차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운전자 및 입퇴사 보고서를 운전자급여, 배차일지와 비교 · 입·퇴사 보고일 준수여부 확인
운행 전 운전자 음주 확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측정 대장 · 배차일지 등 승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단속 행정처분 기록 등 확인 · 운전자의 승무기록 확인

2.1 운전자 공통 자격요건

<p>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종사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경력증명서(속칭 무사고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 관할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관할경찰서 면허계에서 발행 · 사업용 차량 경력자의 운전경력 증명기간은 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응모일 시점까지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 사진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전자격증, 승무전 신규교육수료증(여객), LPG 안전교육 이수증 등(원본을 제출받아서 회사에서 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취업운전자의 승무전 16시간 교육 이수여부 확인(여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체험교육(심화교육 16시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 면제 ※ 다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 후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 우 제외
<p>운전적성 정밀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공단에서 수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적합 종합판정 표, 특별검사 종합판정표, 자격유지검사 적합 종합판정표 등 ○ (신규검사)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 적합판정 이후 (재)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검사일로부터 무사고자 → 신규검사 판정표 유효 - 신규 검사일로부터 유사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재직 중 → 신규검사 판정표 유효 : 신규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 시 → 신규검사 판정표 유효 : 신규검사일로부터 3년 이후 (재)취업 시 → 신규검사 재수검 필요 ○ (특별검사) 사고 또는 벌점발생자, (여객)사업자 요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재직 기간 중 중상(화물 5주)이상의 사고 발생자 → 특별검사 수검 필요 - 1년 누산벌점 81점 이상자 → 특별검사 수검 필요 - (여객)사업자 요청 시 → 특별검사 수검 필요 ○ (자격유지검사)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 이력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이후 만 65세 도래 → 만 65세 되는 생년월일 이후 3개월 이내 자격유지검사 수검 필요 : 만 65세 도래 이후 취업 → 취업일 이후 3개월 이내 자격유지검사 수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 : 이전 수검일 3년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필요 - 만 70세 이상 ◦ 1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 이력이 없는 경우 : 취업 이후 만 70세 도래 → 만 70세 되는 생년월일 이후 3개월 이내 자격유지검사 수검 필요 : 만 70세 도래 이후 취업 → 취업일 이후 3개월 이내 자격유지검사 수검 필요 ◦ 1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 : 이전 수검일 1년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

2.2 업종별 운전자 자격요건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보유 ○ 20세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경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증명서) 확인(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운전자격의 취득(택시 및 버스 운전자격)
화물운송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화물법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증을 소지할 것 ○ 20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3. 운행관리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부제운행 준수 여부(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일보, 배차일지 · 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증과 실차일지 여부 · 부제차량 번호와 차고지 주차여부 확인
면허·등록 노선위반 운행(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운행노선·운행계통인가 관계철 · 운행관계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와 노선·운행계통도, 운행기록 대조 확인
운전자 휴식·휴게 시간 보장 준수 여부 (버스, 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일보, 배차일지 ·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버스) · 운행기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일보와 배차일지, 운행기록 대조 확인

4. 교육관리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신규채용 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여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료증 · 채용 및 발령대장 · 배차일지 및 승무기록 	· 채용운전자에 대한 승무전 교육(16시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운전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료증 · 배차일지 및 승무기록 	· 운전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료증 	· 운전자에 대한 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

5. 교통사고 예방대책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관리대장 · 교통사고보고서 	·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개요내용· 피해 상황· 사고지점 약도, 사고현장 사진 등 관리 여부 확인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여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관리대장 · 교통사고보고서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개략적인 상황 보고(24시간 이내)와 사고보고서 작성 제출(72시간 이내) 유무를 점검

5.1 중대 사고보고

보고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보고후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중대 사고의 보고 기준	구 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2인 이상 · 사망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 중상자 6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사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한 경우(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1명 이상의 중상자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나. 화물차의 정비불량 다. 화물차의 전복 또는 추락. 다만,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
	보고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에게 24시간 이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피해사항 등 개략적인 사항(개인택시 생략가능), 72시간 이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의무 없음

6. 자동차 관리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	· 실차 확인	· 자격증명 게시 운행여부 실차확인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 신호용 부저 작동 여부(버스)	· 실차 확인	· 운송시설의 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작동여부를 확인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버스)		
소화기·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상태(버스)		
차내실내표지판 게시 여부(버스)		·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게시여부 확인
정기검사 수검 여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자동차검사 영수증	· 자동차등록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했는지 점검(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 정비시설 대장 · 자동차정비일지 · 자동차정비기록원부	· 정비시설 보유여부 확인 후 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실시하는지 확인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의 명칭, 자동차의 종류 등) 여부	· 자동차등록증 · 실차확인	· 자동차에 식별하기 쉽도록 운송사업자의 명칭 등 표시여부 확인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 자동차등록증 · 실차확인	·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표의 일치여부, 봉인의 훼손 및 식별 곤란여부 확인 · 등화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운행기록장치 장착·작동·미장착운행 및 기록의 보관·제출·조작 여부	· 운행기록분석시스템 · 6개월 이상의 운행기록 자료	· 차량별로 운행기록장치를 설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 운행기록을 법령에 맞게 제대로 보관·제출 하고 있는지 확인 · 분석결과를 사고예방 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조작·미장착운행 등 여부	· 운행기록분석시스템 · 운행기록 자료	· 차량별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 운행기록 분석결과 기준속도에 맞게 운행하고 있는지 확인
좌석안전띠 상태	· 실차확인	· 구조 및 장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작동되는지 실차 확인

점검항목	점검자료	점검방법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여부		· 타이어의 편마모·파손 및 기준(트레이드 홈 깊이 1.6mm 이하)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버스)		·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확인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운행 여부(화물)		· 화물차의 덮개·포장·고정장치 장치 유무 확인
차량구조·장치 임의 변경 여부	· 자동차등록증 · 실차확인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과 일치여부 · 자동차등록증상의 구조변경내역과 실차대조
승합자동차 운전자 격벽장치 설치여부	· 실차확인	· 2006년 4월 1일 출고된 시내버스

6.1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노선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동차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명·자동차번호·운전자성명·불편사항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 운행계통도 ○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시 하차문의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차 안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버스의 차체에는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6.2 정비시설 및 인력

정의	○ “자동차정비시설 등”이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함	
	구 분	내 용
	1. 차고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차고를 갖출 것
	2. 기계·기구	가. 휠 밸런서 나. 공기압축기 다. 검차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라. 스프레이건 마.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작업장 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술인력	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일 것 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기본		

구 분		업 종 별		자동차종합	소형자동차	자동차전문	원동기전문
		자동차종합	소형자동차	정비업	종합정비업	정비업	정비업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시설 및 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2. 체인부록(1톤이상) 3.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정비·검사 기구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	○	○	○	○	○
시험기 및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2. 노즐시험기 3. 압력측정기 4. 회전반경측정기 5. 휠밸런서 6. 토인측정기 7. 캠버캐스터측정기 8. 엔진종합시험기	○	○	○	○	○	○
공작 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2. 실린더호우닝머신 3. 밸브시트그라인더 4. 밸브시트카터 5. 크랭크연마기						○

비고

- 표는 갖추어야 할 사항을 말한다.
-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3 정비작업범위

구 분		정비작업범위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원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머플러의 교환
동력전달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일의 보충 및 교환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제동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주행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완충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속업쇼바의 교환
전기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세차 및 새시 각부의 급유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원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동력전달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러치의 점검·정비 변속기의 점검·정비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조향장치	◦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주행장치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
	완충장치	◦ 속업쇼바의 점검·정비 ◦ 코일스프링(속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새시 각부의 급유

6.4 자동차 표시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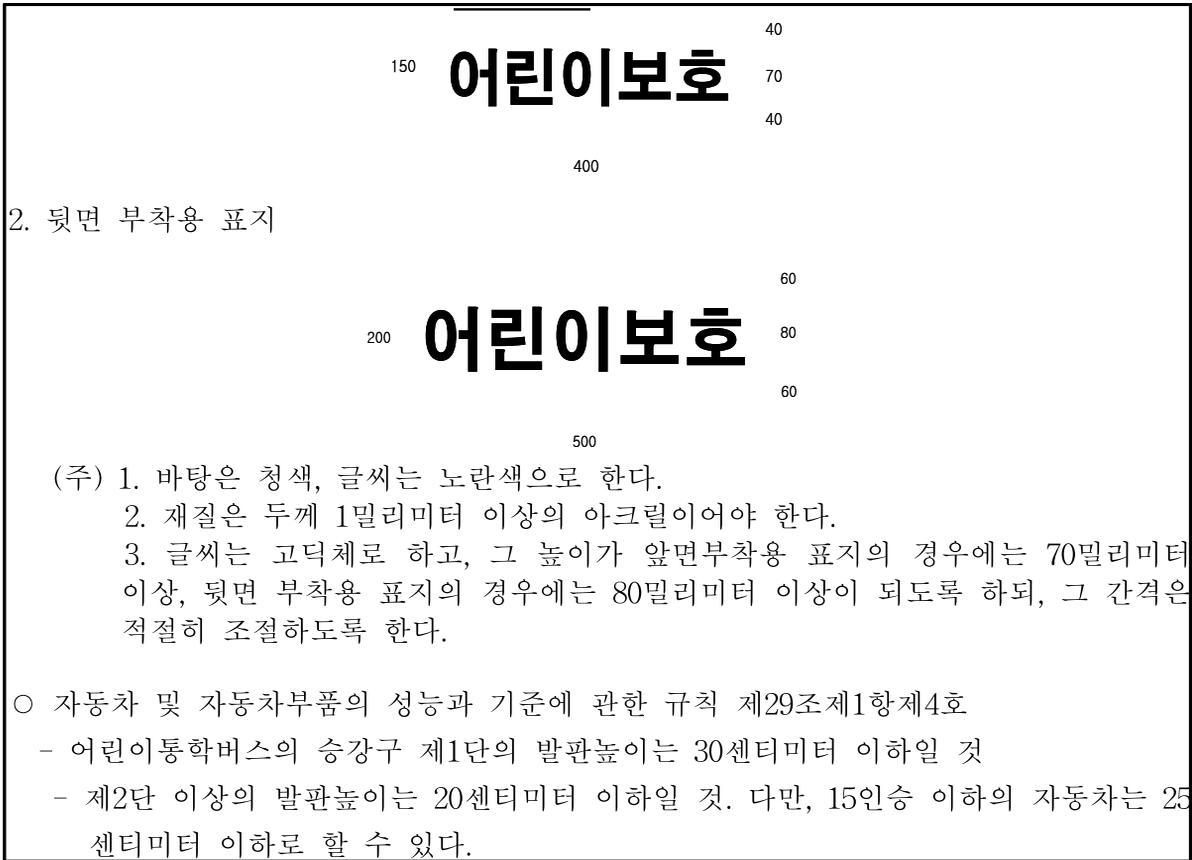
여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외우등고속버스 : "우등고속" 2. 시외고속버스 : "고속" 3. 시외우등직행버스 : "우등직행" 4. 시외직행버스 : "직행" 5. 시외우등일반버스 : "우등일반" 6. 시외일반버스 : "일반" 7.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8.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9.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10.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종류 및 관할관청[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종류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 관할관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11.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6.5 운행기록장치

개념	○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말한다.(교통안전법 제55조,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
설치 대상	○ 설치대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기록의 보관 및 활용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 6개월간 보관 유무와 자료 요청 시 제출 유무 확인 ○ 운행기록의 점검·분석결과를 운행관리·운전자의 교육·훈련자료 활용

6.6 어린이통학버스

<p>○ 도로교통법 제5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1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p>○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제9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 보호표지</p> <p>1. 앞면 부착용 표지</p>
--



비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착안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교통수단안전점검과 추진실적 평가</p> <p>제2절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p> <p>2.3.2 개선권고 등 처분</p> <p>나. (생 략)</p> <p>1)~2) (생 략)</p> <p>3) 교통행정기관은 지정지시 <u>또는 개선권고 그밖에 점검결과 지적사항</u> 대해서는----- ----- -----.</p> <p>제2장 운수산업</p> <p>교통수단안전점검</p> <p>제2절 점검의 준비</p> <p>2.2 점검자</p> <p>가. (생 략)</p> <p>1)~2) (생 략)</p> <p>3) 일반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농어촌버스·<u>마을버스·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건설기계·및 기타 자동차: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u></p> <p>2.4.2 자료 목록</p> <p>나. (생 략)</p> <p>1)~5) (생 략)</p>	<p>제1장 (현행과 같음)</p> <p>제2절 (현행과 같음)</p> <p>2.3.2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교통행정기관은 지정지시, <u>개선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받은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u>----- ----- -----.</p> <p>제2장 (현행과 같음)</p> <p>제2절 (현행과 같음)</p> <p>2.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 -----<u>마을버스·특수여객·일반화물</u>----- -----</p> <p>2.4.2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6) 운전정밀검사 결과 제3절 점검의 실시 3.3 사업장 외에서 실시하는 교통 수단안전점검 3.3.1 점검대상 자동차 가. 개인택시 나.~자. (생 략)</p>	<p>6) 운전<u>적성</u>정밀검사 결과 제3절 (현행과 같음) 3.3 (현행과 같음) 3.3.1 (현행과 같음) 가. 개인택시, <u>전세버스</u> 나.~자. (현행과 같음)</p>
--	---